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01호 ‘26.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(안 제17조 개정)

○ 신규법인 지정 공모 시 공고 절차(공고 사항*, 공고 기간** 등) 근거 신설

* ▲공모 목적 및 대상 시장 등 공모 개요, ▲사업계획서 작성 지침, ▲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·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, ▲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등

** 30일 이상의 공고 필요, 공고 내용 변경 시 7일 이상 공고

○ 신규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, 농어업인 권익 보호,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지정 조건 신설

- 도매시장 개설자(지방정부)가 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/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

[별표 1] <신 설>

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(제17조 관련)

1. 도매시장법인 사업자 역량의 적정성

- 가. 공익성 확보, 산지활동, 농수산물 판매, 조직 및 인력운용, 자금 운용 등 도매시장법인의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
- 나. 재무적 안정성을 갖출 것
- 다.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 실적이 있을 것
- 라. 농·어업 및 농수산물 유통 분야 경력이 있거나,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도매시장법인의 임직원이 전문성을 갖출 것

2.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여도

- 가. 농수산물 도매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에 대한 계획이 적정할 것
- 나. 출하자 지원, 농·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 등 농·어업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계획이 적정할 것
- 다. 산지 및 도매 유통 발전, 도매시장 발전, 물류효율화 등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이 적정할 것

나. 재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(안 제17조의2 신설)

-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기본 요건, 필요 서류 및 개설자의 통지, 결과 통보 근거 신설
-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, 농·어업인 권익 보호,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재지정조건 신설
- 도매시장 개설자(지방정부)가 재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/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

[별표 2] <신 설>

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(제17조의2 관련)

1. 도매시장법인 사업자 역량의 적정성

- 가. 공익성 확보, 산지활동, 농수산물 판매, 조직 및 인력운용, 자금 운용 등 도매시장법인의 사업계획이 적정할 것
- 나. 재무적 안정성을 갖출 것

2.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여도

- 가. 농수산물 도매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에 대한 계획이 적정할 것
- 나. 출하자 지원, 농·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 등 농어업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계획이 적정할 것
- 다. 산지 및 도매 유통 발전, 도매시장 발전, 물류효율화 등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이 적정할 것

3. 도매시장법인의 기존 사업 실적 평가

- 가. 지정조건, 투자목표, 사회환원 계획 등 지정 시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을 것
- 나.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을 것
- 다.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

다. 지정, 재지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안 제17조의3 신설)

- 지정, 재지정 결정 여부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설자 대상으로 이의신청
- 이의신청 받은 개설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중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, 제2항,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,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공모의 목적, 대상 도매시장, 지정 부류, 시설규모,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모의 개요
2.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
3.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기간, 제출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
4.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
5. 그 밖에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.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일한 방법

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신청 마감일은 변경 공고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.

④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지정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1과 같다.

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기초로 해당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전체 배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항목은 해당 도매시장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⑧ 그 밖에 도매시장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2,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를 각각 제17조의4, 제17조의5 및 제17조의7로 하고,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규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을 것
2. 법 제82조제2항제26호, 제82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대상이 아닐 것
3. 향후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가 도매시장 활성화 및 출하자 ·

소비자 보호에 적합할 것

②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규 지정 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
2.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관리 계획서
3. 향후 지정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 운영 및 발전 계획서

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,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지정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2와 같다.

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5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기초로 해당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 통지한다.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전체 배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항목은 해당 도매시장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.

- ⑧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3(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도매시장 법인에 지정 또는 재지정 되지 못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17조의6을 제17조의8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) <신 설>	제17조(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)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,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 <u>공모의 목적, 대상 도매시장, 지정 부류, 시설규모,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모의 개요</u> 2. <u>사업계획서 작성 지침</u> 3. <u>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기간, 제출 방법 등 공모 신청 요령</u> 4. <u>평가기준 및 평가계획</u> 5. <u>그 밖에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</u>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은 <u>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.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</u>
<신 설>	

①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7일 이상
공고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신청
마감일은 변경 공고일로부터 다
시 기산한다.

③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④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지정
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1
과 같다.

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
따른 지정조건을 기초로 해당
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
배점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 공
고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
장 개설자는 별표에서 정하지
아니한 항목을 전체 배점의 100
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
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항
목은 해당 도매시장의 공익적
목적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⑦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⑧ 그 밖에 도매시장 지정에 필
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
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2(도매시장법인의 재지
정 절차 등) ① 법 제23조제6항

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규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을 것

2. 법 제82조제2항제26호, 제82조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대상이 아닐 것

3. 향후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 계획서가 도매시장 활성화 및 출하자·소비자 보호에 적합할 것

②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규 지정 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

2.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관리 계획서

3. 향후 지정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 운영 및 발전 계획서

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,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지정조건의 구체적인 항목은 별표 2와 같다.

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5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기초로 해당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배점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 통지한다.

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전체 배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항목은 해당 도매시장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부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⑧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3(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도매시장 법인에 지정 또는 재지정 되지 못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 · 제17조의3 (생략)

제17조의4 · 제17조의5 (현행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과 같음)

제17조의5 · 제17조의6 (생략)

제17조의7 · 제17조의8 (현행 제17

조의5 및 제17조의6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221